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14

발의연월일: 2024. 10. 29.

발 의 자:이정헌·박홍배·이기헌

박민규・이훈기・김 현

황정아 · 허성무 · 한민수

최민희 · 김영환 · 이병진

정진욱 • 서영교 • 임미애

박희승 • 이워택 의원

(17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 에 대해서는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해당 규정에 따라 이동전화, 시내전화, 인터넷 등 기간통신역무에 대해서는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을 통해 보편·접근권이 보장되고 있으나, 오늘날 국민들의 이용이 폭증하고 핵심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플랫폼,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동 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가 미비해 디지털 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음.

한편,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기간 통신사업자들이 직접 제공함에 따라 제도의 홍보에 소홀하며, 이에 요금감면 대상자임에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는 등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 제공 등의 방식으로 직접 운영·관리함으로써 이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의 목적에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정 기준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전기통신역무 이용 요금 감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지 않도록 요금감면을 사업자들이 제공해왔던 방식에서 탈피해 정부가 디지털이용권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접 운영·관리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요금감면 수준을 확대하며, 디지털이용권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분단케 하여 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디지털 보편・접근권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4조의3신설).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를"을 "관리 및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로 한다.

제2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디지털이용권"이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되거나 전자 또는 자기(磁氣)의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장에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디지털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디지털이용권을 지급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3. 그 밖에 취약계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이용권의 발급 등 디지털이용 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이용권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사업규모,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디지털이용권 소요비용의 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그 밖에 디지털이용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	제1조(목적)
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	
의 효율적 <u>관리를</u> 통하여 전기	<u>관리 및 전기통</u>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	신역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u><신 설></u>	18. "디지털이용권"이란 전기통
	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
	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
	<u>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u>
	무의 요금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되거나 전
	자 또는 자기(磁氣)의 방법으
	로 기록되어 있는 증표를 말
	<u>한다.</u>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①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다음 각</u>	<u>전년도 전</u>

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1.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상 제1 항에 따른 의무 부여가 적절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 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 2.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전 체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 신역무 총매출액의 100분의 1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 이하인 전기통신사 업자

③ ~ ⑧ (생 략) <신 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 기통신역무 매출액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삭 제>

<삭 제>

- ③ ~ ⑧ (현행과 같음)
- 제4조의3(디지털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 지털이용권을 지급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3. 그 밖에 취약계층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이용권의 발급 등 디지 털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이용권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사업규 모,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그 매출 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 다.
- ④ 제3항에 따른 디지털이용권 소요비용의 분담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디지털이용권의 지

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